

[별표 15] <개정 2008.1.14>

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(제103조제1항관련)

좌 석 위 치	안전띠위치	조 절 범 위		조 절 장 치
1.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 석 옆으로 나란 히 되어 있는 좌석	골 반	운 전 자 의 좌석	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 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 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 합할 것	비상잠금조절 장치를 갖추 것
		그 외 좌 석	6살 어린이의 인체모형과 95 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 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	
	어 깨	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		
2. 제 1 호외의 좌 석	골 반	6살 어린이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 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 합할 것		비상잠금조절 장치, 자동잠 금 조 절 장 치 또는 수동잠 금조절장치를 갖출 것
	어 깨	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		비상잠금조절 장치 또는 자 동잠금조절장 치를 갖추 것

주 :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조절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